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18일, 차지호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8.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8.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차지호의원)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자살실태와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의 파급력과 위험성을 고려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대응하여 자살예방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발견하는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차단,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하거나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제3항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오세일)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그 완료시점 이전에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면 기본계획의 안정성이나 신뢰성 또는 연혁적 진행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나, 수립주기의 완료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시급할 수 있고, 유사한 입법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다만, 개정안은 수렵주기의 단축 사유로서 ‘정보통신기술 환경의 변화’만을 들고 있는데, 이는 특히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정보통신망에서 단시간에 급속도로 유통되는 현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자살예방에 불리한 그 외의 사정변경의 발생에 대하여도 수렵주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보건복지부는 자살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소요 예산이나 행정력을 감안할 때 그 실시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유사한 정책분야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실태조사 주기가 5년인 점, 자살률의 급작스러운 증가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할 수 있음.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의 유통금지를 다루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의 체계에 따르면, 현행법에서의 자살유발정보와 같은 불법정보에 대한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정 요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시정 요구 불응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이와 같은 일반적인 체계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보건복지

부장관이 자살유발정보의 삭제 및 차단 등을 직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따를 수 밖에 없도록 절차를 구성하고 있는데, 자살유발정보의 삭제 및 차단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불법정보와 달리 이러한 별도의 특례를 두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